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8505
------	-------

제안연월일 : 2026. 4.

제안자 : 국방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5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441	김재원의원	2025. 2. 26.	2025. 9. 2.
	2210121	추미애의원	2025. 4. 25.	2025. 9. 2.
	2210444	이병진의원	2025. 5. 9.	2025. 9. 2.
	2212609	백선희의원	2025. 9. 2.	2025. 11. 27.
	2214154	위성곤의원	2025. 11. 12.	2026. 3. 17.

나.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6. 3. 23.)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6. 3. 24.)에서 이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제34조의2로 하고,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헌법 및 국방 관련 법률 준수 의무) ① 군인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대한민국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